

일 주 문

제1회 내포문화축길 걷기 축제
지은 내포문화축길 이사장 스님은 5월 30일 '내포가 하나로!' 슬로건을 내세운 제1회 내포 문화축길 걷기 축제를 열었다.

유엔배식절 기념식 참석
진월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스님은 5월 28~30일 한국대표로 태국 아유타야대학교에서 열린 유엔배식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찾아가는 에너지 절약교육
헤만 불교레크리에이션 협회장은 6월~10월 월3회 서울시 소재 15개 사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에너지 절약 교육'을 실시한다. (02)738-7860

호국영령 위한 영산재 시연
선암 태고종 영산재보존회 회장 및 봉원사 주지 스님은 6월 6일 신촌 봉원사에서 '호국영령을 위한 제27회 영산재'를 시연했다.

각원사 제13기 불교대학 졸업식
대원 천안 각원사 주지 스님은 5월31일 제13기 불교대학 졸업식 및 2014년 도 경해학당 수료식을 각원사 대웅보전에서 봉행했다.

108암자구도회 순례
현진 청주 마야사 주지 스님(108암자구도회 지도법사)은 6월 14일 고창 선운사 도솔암과 참담암, 동운암으로 제3차 암자순례를 떠난다.

토요 다라니 철야정진
무심 대구 무심사 무심선원장 스님은 6월부터 매주 토요일 다라니 철야정진 기도 법회를 봉행한다. (053)616-8080

복지재단에 사랑의쌀 전달
덕일 서울 달마사 주지 스님은 6월 2일 동작복지재단(이사장 임성수)에 '사랑의 쌀' 10kg 25포를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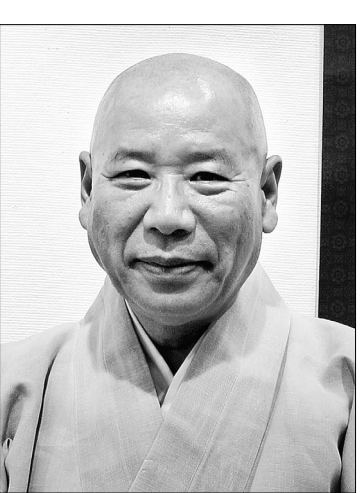
보리수아래 템플스테이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는 6월 13일 경기도 양주 육지장사에서 장애불자들을 대상으로 2015보리수아래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인사〉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 신용환 △운영지원과 이재원 △할용정책과 문영철 박동석 △국세협력과 남상범 <전보> △덕수궁관리소장 김정남 △조선왕릉관리소장 남효대

◇동국대 의료원 △일산행정처장서리 김재선

“인류 문명 해답, 불교예술서 찾아야”

(사)한국불교문화예술인협회 대표
동성 스님



“지금 우리는 물질만능적인 가치관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아 탐욕과 투쟁, 반목과 혼돈의 모순이 팽배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는 인류화합과 세계평화를 위해 새로운 할로를 개척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양식을 벗어나 인류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새로운 가치관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불교의 문화와 예술에서 찾고자 합니다.”

상업화 되는 불교미술의 현실 안타까워
협회 구성, 신인발굴·세미나 등 계획

보였다. 스님은 이번 전시를 통해 대중들이 한국의 선묘, 선화에 대한 근현대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저는 지난 37년 동안 다양한 주제의 선화를 통해 선의 정신을 알려왔습니다. 총 23회의 전시를 하며 대중들에게 불교의 가

르침을 전하고자 했죠. 하지만 요즘 홈쇼핑에서도 달마도를 판매하는 등 선화의 본래 정신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한국불교문화예술인협회를 결성하고 불교예술의 정신을 알리려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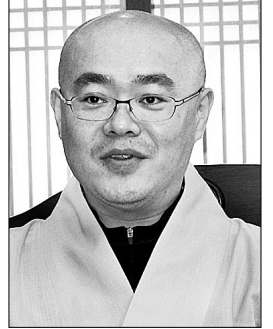
이에 (사)한국불교문화예술인협회는 각종 연구사업, 학술발표, 세미나, 창작활동, 작품발표, 전시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님은 “앞으로 신인공모전을 통한 신인발굴, 학술대회 등을 통해 불교미술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계획을 전했다.

한편, 동성 스님은 통도사에서 고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4년 금강사에서 일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1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통도사, 범어사 불교전문강원, 조계종 중앙교육원, 동국대 승가학과, 동 대학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에서 교학과 선리를 참구했다. 1984년부터 창원 불국사 주지로서 가람수호와 계종별 도심포교에 주력하고, 35년간 선화를 통해 문화포교를 주관했다.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제3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네팔 합동지원팀, 구호 완성도 높여”

더프라이스 상임이사 묘장 스님



“각 단체의 장단점을 취합·보완해 단계적 구호사업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구호활동에 불교계 안팎의 단체가 연합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프라이스(대표 법승)는 지난 4월 25일 발생한 네팔 지진 피해 구호활동을 위해 아동복지전문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국제보건의료NGO 메디피스와 함께 합동 구호 작업을 펼쳤다. 합동지원팀은 지진발생 이틀 후인 4월 28일 1진 파견 후 현재까지 약 7천8백 가구, 4만5천여 명을 구호했다.

더프라이스 상임이사 묘장 스님(사진)은 “더프라이스의 인력, 메디피스의 의료지원, 어린이재단의 재정능력이 삼박자를 이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었다”면서 “현지 NGO 2곳 EPPF-Nepal과 HASTI과도 지역네트워크를 이룬 덕분에 빠른 초기대응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합동플랫폼을 통해 한 달 이상 긴급구호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공동구호작업에 관심을 보이는 단체들이 많다. 향후에는 인명구조에 특화된 NGO 휴먼리버브와 함께 구조 작업에도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스님은 합동지원팀이 네팔 다딩 지역에 지원을 집중한 이유를 설명했다. 스님은 “카트만두는 구호 포화상태인 반면 다딩 지역은 진원지와 매우 가깝지만 행정구역상 다르다는 이유로 구호 활동에서 소외돼 있었다”며 “건물 대부분 흩소로 지어지고 노화돼 피해규모가 훨씬 컸다”고 안타까워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저자거리 포교 원력 이어나갈 것”

열린선원 10주년 맞은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



“시장통에서 포교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불심은 생활 속에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역촌중앙사장은 재래시장 중에서도 오래된 형태를 띠고 있다. 그 시장 건물 2층에 절이 하나 있으니 바로 태고종 열린선원이자다.

2005년 저자거리 포교를 시작한지 10년을 맞아 열린선원 선원장 법현 스님은 전법활동의 포부를 다시금 밝혔다. “굳이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시장 사람들 중 일찍 돌아가신 분들을 위무하는 천도제도 함께 지냅니다.”

스님은 불교가 한문투성이여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글법요집을 내기도 했다. 신라 총담 스님의 ‘미륵세존께 차 올리기’가 차례의 효시라며 명절에 차를 올리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례 없이 꽃을 올리는 불교식 화혼 보급에도 열심이다. 열린선원 안에 4개월 과정의 명상문화아카데미를 열어 불교사상·의례의 기초와 부처님의 생애 등을 가르치는 것도 대중들이 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가족법회 등을 통해 가족신행공동체 형성에도 앞장섰다.

스님은 앞으로 10년을 내다본 새로운 전법활동을 다짐했다. 한글법요집을 다시 펴내는 한편 다양한 사회활동과 종교평화운동에서 앞장설 예정이다.

“결국 불교는 쉬워야 합니다. 쉽게 찾아오는 절, 쉽게 배우는 불교 교리, 생활 곳곳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수행이 바로 불교의 참모습이 아닐까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스마트폰 교육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노년기의 생활의 기능문제 해소하기 위한 총 10회의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6월 2일 성료했다. SK 텔레콤과 연계해 매주 1회씩 진행된 이 교육은 어르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휴대폰 활용교육으로 '세대 공감! 행복한 모바일 세상!'을 주제로 진행됐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스마트기기 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숙 기자

91세 할머니의 끊임없는 장학기부



박필순 할머니는 5월 29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실에서 이계영 총장에게 5000만원을 전했다. 경주캠퍼스는 박 할머니의 법명을 따 박여려화장학회를 설립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할 계획이다.

올해로 아흔한 살인 박 할머니는 “평생 못 배운 한글을 갖고 살면서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었다”며 “이제야 소원을 이루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대구 보성선원, 자비나눔 봉축법회



재단법인 선학원 대구 보성선원(주지 한복)은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인 지난 5월 25일 봉축법회를 열고 제7회 장학금 지급과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이날 장학금은 지역 기초생활수급자와 보성선원 어린이·청소년 법회 학생들에게 지급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초등학생은 대남·대서 두 초등학교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로 나누어 520만원과 80만원, 총 600만원이 지불됐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 미륵종 종도스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지난 1월 27일 본 종단에서 제적되었던 영빈스님(정병복)이 대표로 신청하였던 본 종단 총무원장권한대행 직무 집행정지처분신청이 창원지방법원으로 부터 2015년 5월 26일자로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우려의 마음으로 지켜보아 온 종도스님들께서는 더 이상 일부 스님들의 물지각한 행동으로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종도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미륵종단의 올바른 수행 중풍 확립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5년 6월 1일

한국불교 미륵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모각 합장

【결정문 요약】
사 건 2015 카합 10018 직무집행정지처분
채권자 정병복(영빈스님)
채무자 권형순(모각스님)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1) 사단법인 미륵종은 당시 총무원장이던 덕운스님이 2014.11.27. 사의를 표하자, 2014.12.8. 채권자 등 16명의 간부

출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새 총무원장 선임문제는 앞으로 법인사회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2) 사단법인 미륵종은 2014.12.15. 총무원장 선임 건을 심의하기 위해 법인사회회를 개최한 결과, 그 법인사회회에서 재적이사(6명 중 5명의 이사가 참석하여 그 중 4명의 찬성으로 채무자를 전 총무원장 잔여임기인 1년간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3) 중정은 2014.12.22.자로 총무원장 덕운스님의 사표를 수리하고, 전 총무원장 잔여임기 동안 채무자를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임명한다고 공고하였다.

4) 총무원장의 임명과 그 직무대행에 관한 중헌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 10장 총무원
제 44조 (선출 및 임명)
① 총무원장은 법인사회회에서 선출하여 법인사회회의 인준을 거쳐 중정이 임명한다.
- 제 45조 (임기)
② 전임자의 보궐로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46조 (권한)
① 총15부장은 총무원장을 보좌하며, 총무원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채무자를 총무원장 권한대행자로 선임한 것의 효력 유무 기록 및 위 기초사실을 토대로 살펴본다.

1) 총무원장이 사임하여 유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중헌에 의해 총무부장이 그 유고기간 동안에 총무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권한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사단법인 미륵종에서 채무자를 총무원장 권한대행자로 임명하면서 중헌에 따라 총무원장 선임절차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취하였다면, 그 임명이 중헌에 위배되거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채무자는 법인사회에서 총무원장 권한대행자로 선출되어 중정이 임명하였는바, 중헌 제44조에 규정된 총무원장 임명절차를 준수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총무원장을 임명함에 있어 중회의 선출동의가 필요하므로 그 동의를 받지 않고 채무자를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우선 중헌상 총무원장 임명에 있어 중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중헌 제38조 제3항에 중회의 권한으로 '중앙부서장의 선출 인준 동의 및 불신임 청원권'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중헌 제31조 제1, 2항, 제50조 제1항, 제55조에 원로위원장, 감사원장, 정부부장, 중앙교육부 정부부장의 경우 중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총무원장, 국제불교문화부 정부부장, 교구원로원장 정부부장 및 총무원 정부부장의 경우에는 그 선임절차를 규정한 중헌 제44조 제1항, 제60조, 제69조에 중회의 인준 또는 동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헌 제38조 제3항 규정 내용만을 가지고는 사단법인 미륵종에서 중회 동의 없이 채무자를 총무원장 권한대행자로 선임한 것이 중헌에 위배되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설령 총무원장 선임에 중회의 선출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 안에서 개인

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총무원장 선임 문제를 심의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총무원장 선임은 법인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결의한 것은 총무원장을 법인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중헌규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당시 중회가 중회의원들의 사임으로 사실상 해산되어 중회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점, ③채권자도 중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며, 채무자를 총무원장 권한대행자로 임명한 데에 중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두고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거나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그 임명을 무효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채무자가 총무원장 권한대행자로 선임된 것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주위적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결론 :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위 결정문은 지면 사정 상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요약하였습니다.